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268)

2025. 12.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3268

I. 건의안 개요

1. 발의자 및 제출경과

가. 발 의 자 : 강석주 의원 (25인 찬성)

나. 제출일자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주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의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우리 미래 사회의 주축인 청년 세대는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 다만,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의 고령화와 늦어진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특히, 위기 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각 시·도에서는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조례 등을 통하여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음. 이런 여건에도 작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규정하여 일선 현장과의 괴리를 빚을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혼선은 결국 취약계층인 위기 청년에게 돌아갈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률과 일선 현장 간의 괴리를 막고 위기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년 세대의 고령화와 늦어진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기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되었음.

2 검토의견

1) 주요 현황

- 현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단,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졸돌봄청소년·청년”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10조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신설('24.10.)

2) 청년 연령관련 논의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되,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바에 따른 것임.
- 또한 전국 17개 시도 「청년 기본 조례」 중 15개 시도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의함.

〈표〉 각 지자체 청년연령 규정¹⁾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	청년 연령
1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
3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4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5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6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7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9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1) 25년 12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 기준.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	청년 연령
10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11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12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1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14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18세 이상 45세 이하
15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16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1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19세부터 39세까지

-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각 지자체 가족돌봄청년연령 규정²⁾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	가족돌봄청(소)년 연령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2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3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34세 이하의 사람
4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4세 이하
5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4세 이하
6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18세 미만
7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8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2) 25년 12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 기준.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	가족돌봄청(소)년 연령
9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34세 이하의 사람
10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14세 이상 39세 이하
11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13세 이상 39세 이하
12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39세 이하
13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14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9세 이상 34세 이하
15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세 이상 34세 이하
16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13세 이상 39세 이하
17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세 이상 39세 이하

3) 건의안의 필요성

- 2025년 9월 30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족돌봄청(소)년 실인원은 총 1,110명이며, 이 가운데 10대는 154명(13.9%), 20대는 588명(53%), 30대는 368명(33.2%)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장기간 부양하면서 학업 및 취업, 자립 과정이 지연되는 특성이 나타나기 쉬움. 특히 돌봄부담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20대에 시작된 돌봄이 30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 2022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돌봄시작연령은 31세 이상이 4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돌봄기간은 평균 6.72년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34세 이하의 지원연령 기준은 30대 중·후반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지원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첫 취업 및 안정적 자립시점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 ‘25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21만명이 감소해 전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로 나타남.³⁾
- 가족돌봄청년의 동일연령대 청년들과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를 통한 상황을 비교해보면, 18세 이하 미성년기와 24세 초기청년기까지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으나, 24세 이후 후기 청년기가 되면 가족돌봄청년의 미취업률이 4.3%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사회활동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⁴⁾
- 돌봄부담을 지닌 청년의 경우 가족돌봄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자립이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일반적인 청년 연령보다 폭넓은 연령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또한, 다수 지자체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확인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령 기준도 이에 맞추어 연령을 39세로 상향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계일보 “청년 취업 16개월 연속 내리막… 30대 ‘쉬었음’ 역대 최고치” (2025.09.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10517229> 25년 12월 5일 검색)

4) 김주현(2024). 「가족돌봄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대부분 가족돌봄청년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상위법에서는 34세 이하로 규정하여, 연령의 이원화로 인해 서비스 신청 및 지원과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연령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부서 의견 : 원안동의

- 집행부서에서는 이미 서울시를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취업 등 사회 진출이 늦을 수 밖에 없어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종합 의견

- 본 건의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여, 사회구조 변화와 현장여건을 반영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의 특성상 사회진입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안임.
- 가족돌봄청년 정책은 가족돌봄 및 생계부담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미래준비를 위한 교육과 취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비·주거비 지원, 학업·취업연계, 심리상담서비스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연령을 가족돌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연령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책 취지와도 부합할 것임.

- 돌봄 부담의 장기화, 청년의 자립시기 지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측면 및 지자체 운영기준과의 정합성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상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